**‘산들바람 Breeze’ 동아리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동아리는 산들바람 Breeze (이하 “본 동아리”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동아리는 숭실대에서 한국인 학부생과 외국인 학생(교환학생, 유학생, 어학당 학생 등을 포함)간의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여 한국 학생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경험을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동아리는 숭실대 학생에 의해서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운영진 구분한다.

② 회원은 숭실대 한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으로 구분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이 회비납부의무 등 제7조의 의무를 1학기 이상 해태하는 경우 운영진은 제①항의 권리를 정지시킨다.

**5 조의1 (회원관리)**

① 본 동아리 운영진은 회원 명부 작성 권한을 가진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동아리의 회칙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 및 운영진의 의결사항과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의2 (회비)**

①회비는 본 동아리 계좌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의 회비는 학기 시작 전에 납부한다.

③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반납은 불가하다.

④회비는 2만원(1학기/2월~7월)이고 운영진들의 결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제 8 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본 동아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본 동아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진 3분의2 이상의 의결 혹은 회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학기 당 3번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운영진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다른 부원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인종차별 등과 같은 사유로 산들바람 활동에 지장 줄 시 정도에 따라 1회 경고 후 제명 혹은 즉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진**

**제 9 조(운영진의 구성)** 동아리는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일반 운영진 다수

**제 10 조(운영진의 선임)**

① 운영진은 숭실대 학부생으로 선출한다.

② 차기 운영진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진의 합의로 승인한다.

**제 11 조(운영진의 임기 등)**

① 회장, 부회장, 일반 운영진은 한학기이상 활동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본 동아리의 회장, 부회장, 일반 운영진은 1학기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장, 부회장, 일반 운영진의 회비는 면제된다.

**제 12 조(운영진의 직무)**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동아리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필한다.

③ 일반 운영진은 동아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